



최신 판례 예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 목적에 사용 중인 85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각각 2세대 이상을 보유하거나, 1세대라도 임대 목적에 사용 중인 4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감면되는 것으로, 2세대 이상을 판단할 때에는 감면대상이 아닌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세제과-12172, 2019.08.28

◆ 질 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에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 목적에 사용 중인 85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각각 2세대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포함하여 2세대 이상이면 되는지 여부.

◆ 회 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에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임대 목적물로 등록하여 국내에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을 2세대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 또는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면제 또는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4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은 면제(제1호)를, 제2호에서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 오피스텔은 100분의 75(제2호)을,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 오피스텔은 100분의 50(제3호)을 경감한다고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감면규정의 경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 목적에 사용 중인 85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각각 2세대 이상을 보유하거나, 1세대라도 임대 목적에 사용 중인 4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감면되는 것으로, 2세대 이상을 판단할 때에는 감면대상이 아닌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 종교단체가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상여를 포함한 비정기적인 급여는 월의 지급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면법령소득-482, 2019.10.04

◆ 질 의

종교단체가 정기급여 외에 상여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월의 지급총액을 기준으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는지 또는 「소득세법」 제136조 제1항의 [상여 등에대한 징수세액]의 방법과 같이 상여지급대상 기간별로 간이세액을 환산하여 적용하는지 여부

◆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18, 2019.9.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18, 2019.9.18.

종교인소득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 종교단체가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상여를 포함한 비정기적인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 규정

에 따라 지급하는 월의 지급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 후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해당 분할법인의 합병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법인-2916, 2019.10.06

◆ 질 의

- 질의법인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인 갑법인의 자회사로서,
- '15.1.26. 갑법인은 100% 출자하여 을법인을 설립하였고,
- '17.7.3. 합병법인을 질의법인, 피합병법인을 을법인으로 하여 합병(완전모자회사 합병으로 법인세법상 적격합병)하였으며,
- 질의법인은 2019년 중 A법인을 지배할 목적으로 보유한 주식과 그와 관련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주식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한 후, 갑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 하는 흡수분할합병할 예정임
-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나 인적분할 하고자 하는 사업부(기 흡수합병으로 승계)는 5년 이상 영위하지 않은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 후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해당 분할법인의 합병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마케팅 Tax Consulting

스마트 SDA사업의 공동추진협약에 따른 출자 분담받는 금액은 재화·용역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사업자(갑)가 타사업자(을)와 스마트 SDA 사업 공동추진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개발결과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조건으로 스마트 SDA사업을 수행하면서 갑이 을로부터 약정에 따른 분담금을 받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받은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법령부가-314, 2019.08.28

◆ 질 의

- 사업자(갑)가 타 사업자(을)와 공동으로 스마트 SDA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공동추진협약을 체결하여 스마트 SDA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약정에 따라 을로부터 분담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갑)가 타사업자(을)와 공동으로 스마트 PPE사업의 결과를 활용하여 국내 인허가기관으로부터 SMART 100 표준설계인가를 받기 위한 사업(이하 "스마트 SDA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공동추진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내·외부비용을 분담비율에 따라 공동부담하고 개발결과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조건으로 스마트 SDA 사업을 수행하면서 갑이 을로부터 약정에 따른 분담금을 받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받은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